

SC 조사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의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2024년 통권 제1호

# SC 조사보고서

EU의 ESG 공시제도 동향 및 시사점

— EU Taxonomy, CSRD, CSDDD, SFDR 및 GBR을 중심으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33) 신관 9층 (07329)  
TEL. 02-3775-3339 FAX. 3775-2630 www.cgs.or.kr

# • 목 차 •

## EU의 ESG 공시제도 동향 및 시사점

— EU Taxonomy, CSRD, CSDDD, SFDR 및 GBR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본부 김선민 책임연구원  
(smkim@cgs.or.kr)

Executive Summary

3. 결론 및 시사점

43

1. 연구배경 1

2. EU의 ESG 공시제도 2

2-1. EU Taxonomy 4

2-2. CSRD 12

2-3. CSDDD 21

2-4. SFDR 31

2-5. GBR 38

# Executive Summary\*

-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목표 아래 ESG 공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EU의 공시 제도가 새로운 법률이라기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개정하거나 자율성에 기반한 국제 가이드라인(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ESG 공시 제도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ESG 공시 제도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확대되어 진화하고 있다는 점, EU 회원국 이외에 비회원국까지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사안임
- 유럽연합(EU)의 ESG 공시 제도 5개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이들 법률은 EU내 관련법 및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상호운용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개정이 이루어짐
  -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들 가운데 애매모호한 점도 존재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투자자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EU는 법을 준수 및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위임법을 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펴하고 있음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연구 배경<sup>1)</sup>

- 최근 몇 년간 EU 자본시장 내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sup>2)</sup>
  - 이는 1)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2)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상품 시장의 성장 및 3)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근로자 및 공급망 이슈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에 따른 것임
- 따라서 EU 단일시장 내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자(기업)와 지속가능성 정보 사용자(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당국-기업-투자자 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①투자자(정보 사용자))** 투자 의사 결정에 지속가능성 정보가 중요해졌으나, 투자자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업 간 정보를 비교하기 어려움
  - **(②기업(정보 제공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임
    - 이는 여러 개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프레임워크 또는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낮고 정보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함
  - **(③규제당국)** 규제당국은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방식을 개선(① 주요 정보 제공, ② 기업 간 공시 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 ③ 정보 활용의 용이성)함으로써 투자자-기업간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함
-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기조하에 관련 법률을 개정 및 새로이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음
  - EU는 ESG 공시 제도를 의무화하여 EU 회원국 이외에 비회원국까지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 및 투자자들이 법의 의무 사항을 시행 및 준수할 수 있도록 위임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무엇보다, EU는 글로벌 기준과의 적합성 및 상호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ESG 공시 제도를 마련함
- 최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시 이슈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오랜 기간 지속가능한 이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 오고 있는 EU의 공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내 규제당국 및 자본시장참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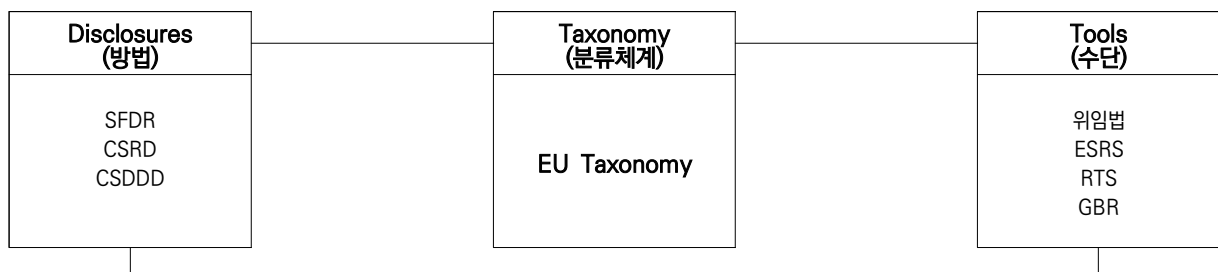
1)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 비재무적 정보, ESG 정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2) European Commission, 2021.4.2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 (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2. EU의 ESG 공시 제도

-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새로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인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젠다(이하 2030 어젠다)’<sup>3)</sup>를 채택함<sup>3)</sup>
- 2016년 11월 22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역내를 비롯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 활동 및 정책 이니셔티브에 지속가능발전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반영하도록 함
- 2017년 6월 20일, 유럽 이사회(Council)는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2030 어젠다를 이행하기로 함
- 이러한 기초하에 2019년 12월 11일,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EU 그린딜(EU Green Deal)을 도입함
  - 1) EU 분류체계(EU Taxonomy)의 확립, 2)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able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CSRD 및 CSDDD 관련) 및 3)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활동에 대한 투자(SFDR 관련)는 EU 그린딜의 핵심임
- EU는 EU 역내에서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의를 통일된 방식으로 분류하고자 EU Taxonomy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정보 비교가 용이하도록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ESG 활동에 대한 내용을 SFDR, CSRD, CSDDD를 통해 보고(또는 공시)의무를 부여함
  - 또한 법률상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투자자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위임법 및 가이드라인(ESRS, GBR, RTS)을 마련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있음
  - 이러한 EU의 일련의 과정은 EU의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함임

〈그림 2-1-\*) EU의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2, 「The EU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저자 정리

3)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핵심으로 하며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다룸

□ 이 보고서에서는 EU Taxonomy, CSRD, CSDDD, SFDR, GBR을 중심으로 EU 공시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표 2-1> 참고)

〈표 2-1〉 조사 대상 법률

구분	법률명	법적 구속력
① EU Taxonomy	EU Regulation 2020/852	○
	· Climate Delegated Act [EU] 2021/2139 / EC, 2021.6.4. 채택	
	· Disclosures Delegated Act [EU] 2021/2178 / EC, 2021.7.6. 채택	
	· Complementary Delegated Act [EU] 2022/1214 / EC, 2022.3.9. 채택	
② CSRD	· Environmental Delegated Act [EU] 2023/2486 / EC, 2023.6.27. 채택	○
	EU Directive 2022/2464	
	· 회계 지침 (the Accounting Directive): Directive 2013/34/EU	
	· 투명성 지침 (the Transparency Directive): Directive 2004/109/EC	
③ CSDDD	· 감사 지침 (the Audit Directive): Directive 2006/43/EC	○
	· 감사 법률 (the Audit Regulation): Regulation (EU) No 537/2014	
④ SFDR	EU Regulation 2019/2088	○
⑤ GBR	EU Regulation 2023/2631	○

\* CSRD는 회계 지침(2013/34/EU)의 후속 법률이지만 이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법률을 개정한 지침(directive)임

\*\* EC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을 의미

[참고 1] EU 법령 (Types of Legislation in the EU)

	법령 형태	구속력 여부
高 ↑	· 법률(Regulations)	모든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지님
	· 지침(Directives)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지침 내용의 형식과 실행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이 결정
구속력 ↓	· 결정(Decisions)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결정대상 (특정 회원국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음
	· 권고(Recommendations)	법적 구속력이 없음
低	· 의견(Opinions)	법적 구속력이 없음

\*참고: 유럽 집행위원회([commission.europa.eu](http://commission.europa.eu)), 유럽연합([european-union.europa.eu](http://european-union.europa.eu)),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http://world.moleg.go.kr))

\*\*저자 정리

## 2-1. EU Taxonomy

### • EU Taxonomy 제정 배경 및 목적<sup>4)</sup>

- (제정 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3(3)조는 유럽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개선(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을 목표로 함
  - 2016년 1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고위전문가(High-Level Expert) 그룹에 지속가능한 금융(sustainable finance)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 2018년 1월 31일, 고위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climate change mitigation)과 더불어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즉, 통일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 EU 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및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EU Taxonomy는 2050년까지 EU 역내 기후 중립(climate-neutral) 달성을 위해 ‘친환경(green)’ 및 ‘지속가능한(sustainable)’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만든 분류 체계로,
  - 동 법률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입안자, 기업,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마련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
  - EU Taxonomy는 2020년 7월 12일 발효되었으며, 이후 위임법(delegated acts)이 마련되어 최종 공표됨 (<표 2-1-1> 참고)

**<표 2-1-1> EU Taxonomy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20.7.12.	EU Taxonomy 시행
2021.12.9.	Climate Delegated Act 최종 공표
2021.12.10.	Disclosures Delegated Act 최종 공표
2022.7.15.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최종 공표
2023.11.21.	Environmental Delegated Act 및 Climate Delegated Act(개정안) 최종 공표

\* 상기표는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sion.europa.eu](http://commission.europa.eu))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4) Regulation (EU) 2020/852를 참고하여 정리함

• EU Taxonomy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또는 범위) 1) EU 회원국 여부, 2) 상장사 여부, 3) 금융회사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EU 회원국에 속한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EU Taxonomy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 기관이 비회원국(Non-EU)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 법률을 준수해야 함 (<표 2-1-2> 참고)
- ① NFRD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② CSRD의 적용을 받는 기관도 EU Taxonomy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므로 비(非)회원국이나 비상장사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비(非)회원국 회사라도 CSRD의 적용을 받는 경우 EU Taxonomy를 준수해야 함
  - NFRD는 상장사에만 적용되나, CSRD는 적용 요건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한 비상장사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사도 EU Taxonomy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표 2-1-2> EU Taxonomy 적용 대상 또는 범위

구분	적용 대상				
	① EU 회원국 여부		② 상장사 여부		③ 금융사 포함 여부
	EU 회원국	비(非) 회원국	상장사	비상장사	금융사 포함
EU Taxonomy	○ <sup>1)</sup>	△ <sup>2)3)</sup>	○	△ <sup>4)5)</sup>	○ <sup>6)</sup>

\* Regulation(EU) 2020/852 제1조와 Directive 2013/34/EU(NFRD) 제19a조 및 제29조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 EU Taxonomy 적용을 받는 EU 회원국에 속한 (금융)기관이 비회원국에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음  
 2) CSRD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한 EU Taxonomy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3) CSRD 요건을 충족하는 비(非) 회원국 기관도 EU Taxonomy의 적용을 받음  
 4) NFRD 또는 CSRD 적용 대상인 경우 EU Taxonomy의 적용을 받음  
 5) NFRD는 상장사에만 적용되나, CSRD는 적용 요건에 따라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6) SFDR 제8조 및 제9조의 해당하는 펀드도 EU Taxonomy의 적용을 받음

- (주요 내용) EU Taxonomy 제9조는 ① 온실가스 감축(climate change mitigation), ②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⑤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복원 등 6개의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표 2-1-3> 참고)
- 동 법률 제3조는 (a)항~(d)항은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함
- 즉,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하며,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되(Do No Significant Harm, DNSH),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e.g.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준수 및 ④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을 해야 함

〈표 2-1-3〉 EU Taxonomy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b>환경목표 (제9조)</b>	<b>① 온실가스 감축*</b> (Climate change mitigation)  <b>② 기후변화 적응*</b> (Climate change adaptation)  <b>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b>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	<b>④ 순환경제로의 전환</b>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⑤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b>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b>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b>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b>환경친화적·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 (제3조 (a)-(d))</b>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Do No Significant Harm, DNSH)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준수 ④ 경제활동별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	

\*EU Regulation 2020/852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목표 ①과②는 2022년부터 시행하며 그 외 목표들(③~⑥)은 2023년부터 시행함  
 \*\*저자 정리

• EU Taxonomy 위임법

- **(위임법)** EU Taxonomy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위임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즉, EU Taxonomy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임법을 마련하여 정책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위임법 현황 및 시행)** EU Taxonomy 위임법은 ① Climate Delegated Act, ② Disclosure Delegated Act, ③ Complementary Delegated Act, ④ Environmental Delegated Act로 모두 4개임 (〈표 2-1-4〉 참고)
  - Climate Delegated Act는 EU Taxonomy 제9조에서 제시한 6가지 환경목표 중 1) 온실가스 감축 및 2)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한 기술적 충족 요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임
  - Disclosure Delegated Act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내용 및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됨
  - Complementary Delegated Act는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 관련 활동을 고려하여 Climate Delegated Act를 수정한 것이며,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임
  - Environmental Delegated Act는 EU Taxonomy 제9조에서 제시한 6가지 환경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들에 대한 기술적 충족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시행함

〈표 2-1-4〉 EU Taxonomy의 위임법 현황 및 시행 시기

위임법 (Taxonomy Delegated Acts)	주요 내용	시행 시기 <sup>2)</sup>
① Climate Delegated Act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기술적 충족 요건(TSC <sup>1)</sup> )을 설명	2022.1.1.
② Disclosure Delegated Act	기업의 공시 정보 내용 및 공시 의무 준수를 위한 방법론을 설명	2022.1.1.
③ Complementary Delegated Act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고려하여 Climate Delegated Act를 수정	2023.1.1.
④ Environmental Delegated Act	나머지 환경 목표 (〈표 2-1-2〉의 ③~⑥)에 대한 기술적 충족 요건(TSC)을 설명	2024.1.1.

<sup>1)</sup>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

<sup>2)</sup>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sion.europa.eu)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참고로 Disclosure Delegated Act는 〈표 2-1-5〉와 같이 Annex에서 기업 유형에 따라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음

〈표 2-1-5〉 Disclosure Delegated Act((EU) 2021/2178)의 기관 유형별 공시

기관 유형	공시 내용	공시 방법 (템플릿)
① 비금융사 (Non-financial undertakings)	Annex I	Annex II
② 금융사 (Financial undertakings)		
자산운용사(asset manager)	Annex III & XI	Annex IV
신용평가사(credit institution)	Annex V & XI	Annex VI
투자회사(investment firm)	Annex VII & XI	Annex VIII
(재)보험사((re)insurance undertakings)	Annex IX & XI	Annex X

• EU Taxonomy 공시 사례

- EU Taxonomy는 적격성(eligibility) 및 적합성(alignment) 관점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기술적 충족 요건 (TSC)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성적(qualitatively) 및 정량적(quantitatively)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함 [(EU) 2021/2178 Annex I, III (〈그림 2-1-1〉 와 〈그림 2-1-2〉 참고)
- 실제 일부 유럽기업의 EU Taxonomy 공시 사례를 살펴보면, 위임법에 근거하여 1) EU Taxonomy의 6가지 환경목표를 토대로 회사의 사업활동(business activities)을 식별하여 적격성 여부를 밝히고 있으며, 해당 사업활동이 EU Taxonomy 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시함
- 또한, (기업별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환경 목표별-주요성과 지표\*별 적격성 및 적합성 및 주요성과 지표별 적격성 및 적합성 정보를 제시함

\* 주요 성과별 지표: ① 매출액(turnover), ② 자본적지출(CapEX), ③ 운영비용(OpEX)



〈그림 2-1-2〉 EU Taxonomy 공시 사례 (2) - 서번트렌트(SEVERN TRENT)

▶ 회사의 사업 활동 및 EU Taxonomy 환경목표 식별	▶ 주요성과 지표(KPI Disclosure)의 적격성 및 적합성																																										
<p><b>OUR ELIGIBLE AND ALIGNED BUSINESS ACTIVITIES</b></p> <table border="1"> <thead> <tr> <th>Our Business Activities</th> <th>EU Taxonomy objectives</th> <th>Alignment status</th> </tr> </thead> <tbody> <tr> <td><b>Water resources, water networks and water treatment</b> • Construction, extension and operation of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ystems* • Renewal of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ystems* • Water supply*</td> <td>CCM CCM SPW</td> <td rowspan="2">Eligible and aligned</td> </tr> <tr> <td><b>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b> • Construction, extension and operation of 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s ('SUDS') • Renewal of 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 Urban waste water treatment</td> <td>CCM SPW CCM CCA SPW</td> </tr> <tr> <td><b>Bioresources</b>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energy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renewable non-fossil gaseous and liquid fuels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 Production of heat/cool from bioenergy • Anaerobic digestion of sewage sludge</td> <td>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td> <td rowspan="2">Eligible</td> </tr> <tr> <td><b>Severn Trent Green Power</b> • Recovery of bio-waste by anaerobic digestion or composting • Electricity generation using solar photovoltaic technology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wind power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hydropower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energy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 Anaerobic digestion of bio-waste • Composting of bio-waste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td> <td>TCE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td> </tr> <tr> <td><b>Other activities</b> • Conservation, including restoration, of habitats, ecosystems, and species • Afforestation • Forest management • Restoration of wetlands • Nature-based solutions for flood and drought risk prevention and protection •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nergy efficiency equipment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in buildings (and parking spaces attached to buildings)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instruments and devices for measur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buildings • Close to market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 Flood risk prevention and protection infrastructure •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associated services for leakage control technologies enabling leakage reduction and prevention in water supply systems</td> <td>PRBE CCM CCA CCM CCA CCM CCA SPW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SPW</td> </tr> </tbody> </table> <p>CCM Climate change mitigation CCA Climate change adaptation SPW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TC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PRB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p>	Our Business Activities	EU Taxonomy objectives	Alignment status	<b>Water resources, water networks and water treatment</b> • Construction, extension and operation of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ystems* • Renewal of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ystems* • Water supply*	CCM CCM SPW	Eligible and aligned	<b>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b> • Construction, extension and operation of 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s ('SUDS') • Renewal of 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 Urban waste water treatment	CCM SPW CCM CCA SPW	<b>Bioresources</b>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energy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renewable non-fossil gaseous and liquid fuels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 Production of heat/cool from bioenergy • Anaerobic digestion of sewage sludge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Eligible	<b>Severn Trent Green Power</b> • Recovery of bio-waste by anaerobic digestion or composting • Electricity generation using solar photovoltaic technology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wind power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hydropower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energy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 Anaerobic digestion of bio-waste • Composting of bio-waste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CE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b>Other activities</b> • Conservation, including restoration, of habitats, ecosystems, and species • Afforestation • Forest management • Restoration of wetlands • Nature-based solutions for flood and drought risk prevention and protection •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nergy efficiency equipment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in buildings (and parking spaces attached to buildings)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instruments and devices for measur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buildings • Close to market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 Flood risk prevention and protection infrastructure •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associated services for leakage control technologies enabling leakage reduction and prevention in water supply systems	PRBE CCM CCA CCM CCA CCM CCA SPW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SPW	<p>① 환경 목표별 / 주요성과 지표별 적격성 및 적합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CDA/EDA OBJECTIVES</th> <th colspan="2">Turnover</th> <th colspan="2">Operating Costs</th> <th colspan="2">Capital Expenditure</th> </tr> <tr> <th>Eligible %</th> <th>Aligned %</th> <th>Eligible %</th> <th>Aligned %</th> <th>Eligible %</th> <th>Aligned %</th> </tr> </thead> <tbody> <tr> <td>Climate change mitigation</td> <td>90%</td> <td>48%</td> <td>84%</td> <td>47%</td> <td>94%</td> <td>57%</td> </tr> <tr> <td>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td> <td>5%</td> <td>5%</td> <td>6%</td> <td>6%</td> <td>5%</td> <td>5%</td> </tr> </tbody> </table> <p>*Whilst a number of our business activities are eligible to also report under the other objectives, they don't yet meet the alignment criteria so we have reported our eligible activities here under only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objective and the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objective to avoid double counting.</p> <p>② 주요성과 지표별 적격성 및 적합성</p>	CDA/EDA OBJECTIVES	Turnover		Operating Costs		Capital Expenditure		Eligible %	Aligned %	Eligible %	Aligned %	Eligible %	Aligned %	Climate change mitigation	90%	48%	84%	47%	94%	57%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5%	5%	6%	6%	5%	5%
Our Business Activities	EU Taxonomy objectives	Alignment status																																									
<b>Water resources, water networks and water treatment</b> • Construction, extension and operation of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ystems* • Renewal of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ystems* • Water supply*	CCM CCM SPW	Eligible and aligned																																									
<b>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b> • Construction, extension and operation of 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s ('SUDS') • Renewal of waste 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 Urban waste water treatment	CCM SPW CCM CCA SPW																																										
<b>Bioresources</b>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energy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renewable non-fossil gaseous and liquid fuels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 Production of heat/cool from bioenergy • Anaerobic digestion of sewage sludge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Eligible																																									
<b>Severn Trent Green Power</b> • Recovery of bio-waste by anaerobic digestion or composting • Electricity generation using solar photovoltaic technology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wind power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hydropower • Electricity generation from bioenergy • Cogeneration of heat/cool and power from bioenergy • Anaerobic digestion of bio-waste • Composting of bio-waste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CE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b>Other activities</b> • Conservation, including restoration, of habitats, ecosystems, and species • Afforestation • Forest management • Restoration of wetlands • Nature-based solutions for flood and drought risk prevention and protection •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nergy efficiency equipment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in buildings (and parking spaces attached to buildings)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instruments and devices for measur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buildings • Close to market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 Flood risk prevention and protection infrastructure •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associated services for leakage control technologies enabling leakage reduction and prevention in water supply systems	PRBE CCM CCA CCM CCA CCM CCA SPW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CCM CCA SPW																																										
CDA/EDA OBJECTIVES	Turnover		Operating Costs		Capital Expenditure																																						
	Eligible %	Aligned %	Eligible %	Aligned %	Eligible %	Aligned %																																					
Climate change mitigation	90%	48%	84%	47%	94%	57%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5%	5%	6%	6%	5%	5%																																					

\*출처: 서번트렌트(SEVERN TRENT), 2023, "Our EU Taxonomy Disclosure"

- EU Taxonomy와 EU 법률과의 관계성

- EU Taxonomy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EU 내 여러 관련 규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률임
- <표 2-1-6>는 EU Taxonomy 조항별 EU 내 법률들과의 관계성을 일부 정리한 표이며, 일례로 EU Taxonomy는 SFDR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

〈표 2-1-6〉 EU 분류체계 (EU Taxonomy)와 EU 법률과의 관계성<sup>5)</sup>

구분		EU 관련법 (interconnections or interoperability)	EU Taxonomy 위임법
EU Taxonomy	· 제2조 (정의) -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의 정의 - 지속가능한 투자의 정의	SFDR (EU Regulation 2019/2088)	-
	· 제18조 (최소한의 안전장치)		
	· 제19조 (기술적 충족 요건(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		
	· 제21조 (관할당국)		
	· 제8조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투명성)		
	① 온실가스 감축	Directive 2009/31/EC	Climate Delegated Act
	② 기후변화 적응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제9조 (환경 목표) 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① Regulation - (EU) No 1380/2013	Environmental Delegated Act
		② Directives - 2000/60/EC, 2006/7/EC, 2006/118/EC, 2008/66/EC, 2008/105/EC, 91/271/EEC, 91/976/EEC, 98/83/EC	
		③ Decision - (EU) 2017/848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① Regulation - (EC) No 1013/2006, (EC) No 1907/2006, (EU) 2019/1021, (EU) No 1357/2014		
	② Directives - 94/62/EC, 2000/53/EC, 2006/66/EC, 2008/98/EC, 2010/75/EU, 2011/65/EU, 2012/19/EU, (EU) 2019/883, (EU) 2019/904, 1999/31/EC		
	③ Decision - 2000/532/EC, 2014/955/EU		
⑤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① Directives - 2000/60/EC, 2004/35/EC, 2004/107/EC, 2006/118/EC, 2008/50/EC, 2008/105/EC, 2010/75/EU, (EU) 2016/802, (EU) 2016/2284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	① Regulation - (EU) No 995/2010, (EU) No 511/2014, (EU) No 1143/2014, (EC) No 338/97		
	② Directives - 2009/147/EC, 91/676/EEC, 92/43/EEC		
· 제8조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투명성)	CSRD (EU Directive 2022/2464), 舊 NFRD		

\*EU Taxonomy (EU Regulation 2020/852), Climate Delegated Act, 그리고 Environmental Delegated Act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5)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관계성이란 분석 대상 법률이 기타 EU 법률과의 관련이 있거나(interconnections)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2-2.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 • CSRD 제정 배경 및 목적<sup>6)</sup>

- (제정 배경) 2019년 1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NFRD(2013/34/EU)의 비재무적 정보공시 조항을 검토하기로 함
  - 이는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비재무적(non-financial) 용어에 대한 혼란(inaccurate)으로 해당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해졌기 때문임
    - \* 비재무적 정보가 재무적 정보와 관련이 없는 정보로 오해
      - NFRD상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 라는 용어를 ‘지속가능성 정보(sustainability information)’ 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검토 결과, ① 기업 대부분이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공개된 정보만으로 기업 간 (지속가능성) 정보 비교가 어렵다는 점, ③ 정보 사용자의 공시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가 주요 문제로 지적됨
  - 따라서 EU 차원의 정책 마련을 통해 1)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 간 정보 격차 해소, 2)지속가능성 리스크 발생 방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 기업의 지속가능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은 2014년 채택된 비재무적 정보공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을 대체하는 법률이지만,
  - CSRD는 ① 회계 지침 (Accounting Directive(a.k.a NFRD)), ② 투명성 지침 (Transparency Directive), ③ 감사 지침 (Audit Directive), ④ 감사 법률 (Audit Regulation)) 등 관련 법률 4개를 개정한 것임
    - 유럽연합이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를 구축하여 녹색 경제로의 전환(Green transition)을 꾀함에 따라 EU 내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legal interconnections) 및 일관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짐
    - 이와 관련한 내용은 「CSRD 구성」에 후술함
- (제정 목적) CSRD의 제정 목적은 1) 비재무적 정보와 관련한 법률 보완, 2)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유치 촉진에 있음
  -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기업은 CSRD에서 요구하는 공시 정보 범위 및 기준을 명시한 ESRS(CSRD 이행을 위한 도구) 참고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 CSRD는 유럽 단일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이니셔티브 또는 프레임워크와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고려함

6) Directive(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를 참고하여 정리함

• CSRD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 지난 2021년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CSRD를 발의하였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2022년 6월 22일)을 거쳐 2023년 1월 5일 최종 시행됨
- 2023년 12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최종적으로 발표함
- CSRD 제19조(Contents of the management report) 및 제19a조(Sustainability reporting)와 제29조(The consolidated management report) 및 제29a조(Consolidated sustainability reporting)는 다음과 같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 공시 항목: ①지속가능한 이슈와 관련된 회사의 사업모델 및 전략, ② 실사 과정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이슈 정책, ③실행한 정책의 결과, ④리스크 관리, ⑤주요 성과 지표
- 그러나 CSRD 상 상기 조항들은 구체적인 공시 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유럽연합(EU)은 ESRS를 통해 동 법률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표 2-2-1〉 CSRD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21.4.21.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SRD 발의
2022.6.22.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the Council), CSRD 승인
2023.1.5.	CSRD 시행 (entered into force)

\* 상기표는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sion.europa.eu)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CSRD 구성<sup>7)</sup>

- (CSRD 구성) CSRD(EU Directive 2022/2464)는 기존 법률 4개 (① 회계 지침 (Accounting Directive), ② 투명성 지침 (Transparency Directive), ③ 감사 지침 (Audit Directive), ④ 감사 법률 (Audit Regulation))를 개정하여 이들 법률 조항 간 일관성을 보장함 (〈표2-2-2〉 참고)
- (회계 지침)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 및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짐
  - 1) 공시 대상 범위 확대, 2) 용어의 정의 명확화, 3)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원칙의 명확화, 4) 기존 조항 수정 및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와 관련한 조항 등이 새로이 추가됨
- (투명성 지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요건의 투명성 제고가 개정의 주된 목적이며, EU 회원국과

7) Directive(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를 참고하여 정리

- 비상장사 및 EU 비회원국(=제3국)간의 공시 요건의 형평성(equivalence)을 고려하여 개정됨
- 1)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의 정의,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공시, 3) 재무제표 감사 등 회계 지침 및 감사 지침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정이 이루어짐
- (감사 지침) 개정 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assurance)의 의무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증하는 외부감사인(statutory auditors) 자격 요건 등이 추가됨
- 1) 법률의 범위(subject matter) 확대: 개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statutory audit of annual and consolidated accounts) 감사 → (개별 및 연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검증(assurance of annual and consolidated sustainability reporting)까지 확대, 2) 법률의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결과 공시 내용 등이 추가됨
- (감사 법률) 감사 지침을 보완할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확립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사 법률은 개정을 통해 비감사용역 금지 및 감사 수수료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감사용역 금지 및 제한 범위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서비스 및 검증 수수료를 포함함

〈표 2-2-2〉 CSRD 구성

▶ CSRD 법률명: EU Directive 2022/2464
① 회계 지침 (Accounting Directive): Directive 2013/34/EU
② 투명성 지침 (Transparency Directive): Directive 2004/109/EC
③ 감사 지침 (Audit Directive): Directive 2006/43/EC
④ 감사 법률(Audit Regulation): Regulation (EU) No 537/2014

• CSRD 주요 내용: CSRD와 NFRD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근 몇 년간 투자자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NFRD 체제만으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 위험 및 기회 등 투자자(지속가능성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우선, 기업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공시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존재함
- 투자자 입장(정보 사용자)에서 기업 간 지속가능성 정보를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 또한 높지 않음
  - 지속가능성 정보가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아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임
  - 무형자산(e.g. 인적자본, 브랜드, 지적재산권 등)이 민간부분 투자에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는 과소 보고(under-reported) 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연합(EU)은 CSRD 법률을 통해 기존 NFRD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CSRD가 기존 NFRD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비상장사 및 EU 비회원국 등), ② 주요 공시 내용(주제) 확대, ③ 이중 중대성 평가의 의무화, ④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의 제3자 검증 의무화(향후 제한적 검증 → 합리적 검증<sup>8)</sup>), ⑤ ESRS 보고(공시) 기준 준수, ⑥ 별도의 보고서를 통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⑦ 유럽 단일 전자 보고 형식(ESEF) 준수
- ①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 NFRD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상장사에 적용되나, CSRD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상장사까지 적용됨
  - ② 주요 공시 내용(주제) 확대: NFRD는 환경, 사회 및 근로자 이슈, 인권, 반부패 이슈, 이사회 다양성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CSRD는 생물다양성, 가치사슬,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존 공시 주제 범위를 확대함
  - ③ 이중 중대성 평가의 의무화: NFRD 체제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CSRD는 이를 의무화함
    - \*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성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외부 관점(outside-in perspective))와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내부 관점(inside-out perspective))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④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의 제3자 검증 의무화(향후 제한적 검증 → 합리적 검증): NFRD는 지속가능성 정보 검증을 회원국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으나,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의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함
  - ⑤ ESRS 보고(공시) 기준 준수: NFRD 체제하에서 EU 회원국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ISSB 등)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CSRD는 ESRS 기준에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⑥ 별도의 보고서를 통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사업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NFRD와는 달리, CSRD는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⑦ 유럽 단일 전자 보고 형식 준수: NFRD 체제에서는 홈페이지 및 PDF 형태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CSRD는 유럽 단일 전자 보고 형식(ESEF)을 준수하도록 함
- 두 법률간 보다 구체적인 내용 비교는 <표 2-2-3>을 참고 바람

8) 제한적 검증이란 정보이용자의 인증대상 정보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 이상이지만 합리적 확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리적 검증이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되어 공시되지 않는 등 확인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함

〈표 2-2-3〉 NFRD vs. CSRD

구분	NFRD	CSRD
• 적용 대상 (또는 범위)	·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상장사 cf) 적용 대상 기업 수: 약 11,000사	· 대기업 기준 <sup>1)</sup> ① 2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 ② 순매출액이 5,000만 유로 초과 ③ 대차대조표 총액이 2,500만 유로 초과 (① ~ ③ 중 2개 이상 충족) cf) 적용 대상 기업 수: 약 42,500사
• 주요 공시 내용	· 환경/사회 및 근로자 이슈 · 인권 존중 · 반부패 및 뇌물 이슈 · 이사회 다양성	NFRD 공시 내용 + $\alpha$ · 기후변화 · 해양 및 수자원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 자원사용 및 순환 경제 · 고용 및 인력 · 가치사슬 내 근로자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 · 기업의 행동강령 · 기타 지속가능성 이슈
• 적용 및 시행	· FY 2018 ~ FY 2022 시행 → FY 2023부터 CSRD로 대체	· FY 2023 ~ → 2023년 1월 시행 및 적용 [적용 대상별 시행 시기] ▶ NFRD 적용 대상: FY 2024 (2025년 공시) ▶ NFRD 미적용 대상: FY 2025 (2026년 공시) ▶ SMEs (상장사): FY 2026 (2027년 공시) ▶ 제3국 기업: FY 2028 (2029년 공시)
• 주된 목적	▶ 기업 간 ESG 정보 비교 용이 ▶ ESG 정보공시의 투명성 제고	▶ 표준화된 ESG 정보공시 → 기업 간 정보 비교 용이 ▶ 정보의 질(quality) 및 정보공시의 투명성 제고 ▶ EU 법률(EU taxonomy, SFDR 등)과의 정합성 고려 → 효율적인 ESG 정보공시를 위함
• 중대성 평가	· 이중 중대성 (연성규범)	· 이중 중대성 (의무화)
• 검증(감사) 방식	· 회원국의 자율적 선택	·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의 제3자 검증 의무화 <sup>2)</sup> : 제한적 검증 → 합리적 검증
• 미준수 시 제재	· 미준수시 제재가 부여되나 회원국별로 제재 수위는 다름	
• 보고 (또는 공시) 기준	· 글로벌 공시기준 중 선택 (회원국의 자율적 선택)	· ESRS <sup>3)</sup>
• 보고 (또는 공시) 위치	·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사업보고서상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재
• 보고 (또는 공시) 형태	· Online / PDF	· ESEF <sup>4)</sup> / XHTML

\* 저자 정리

<sup>1)</sup> 기업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범위가 다르나 상기표에서는 대기업(large undertakings) 기준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술함

<sup>2)</sup> NFRD 체제하에서 지속가능정보 보고의 제3자 검증은 의무가 아님

<sup>3)</sup>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은 CSRD 이행(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을 위한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제시함

<sup>4)</sup> 유럽 단일 전자 보고 형식 (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을 의미함

• CSRD의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및 기준) CSRD의 적용 대상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① 근로자의 수, ② 순매출액 (net turnover), ③ 대차대조표 총액(balance sheet)을 적용 기준으로 고려함
- 3개의 적용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CSRD의 적용 대상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개정 NFRD 제3조를 참고하여 <표 2-2-4>에 구체적으로 정리함

<표 2-2-4> CSRD의 적용 대상 및 기준

(초과: >, 이하: ≤)

구분	적용 기준			적용 대상
	근로자 수 ①	규모1. ②: 순매출액 (net turnover)	규모2. ③: 대차대조표 총액 (the balance sheet)	
▶ 초소형 기업	≤ 10명	≤ EUR 0.9 mil	≤ EUR 0.4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소형 기업	≤ 50명	≤ EUR 10 mil	≤ EUR 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중견 기업 <sup>1)</sup>	≤ 250명	≤ EUR 50 mil	≤ EUR 2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대기업	> 250명	> EUR 50 mil	> EUR 2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소규모 기업 집단 <sup>2)</sup>	≤ 50명	≤ EUR 10 mil	≤ EUR 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중견 기업 집단 <sup>3)</sup>	≤ 250명	≤ EUR 50 mil	≤ EUR 2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대규모 기업 집단 <sup>4)</sup>	> 250명	> EUR 50 mil	> EUR 25 mil	① ~ ③ 중 2개 충족 시

\* 개정(amending) NFRD의 제3조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sup>1)</sup> 초소형(micro-undertakings) 및 소형 기업(small undertakings)이 아닌 기업

<sup>2)</sup> 모회사와 자회사(parent and subsidiary undertakings)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집단(small groups)

<sup>3)</sup> 소규모 기업 집단(small groups)이 아니면서 모회사와 자회사(parent and subsidiary undertakings)로 구성된 중견 기업 집단 (medium-sized groups)

<sup>4)</sup> 모회사와 자회사(parent and subsidiary undertakings)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 집단(large groups)

- (시행 시기) CSRD의 적용 시행 시기 또한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례로 NFRD 적용 대상 기업은 2025년(회계연도 2024년)부터 CSRD를 준수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함

○ CSRD 적용 및 시행시기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5>에 정리함

<표 2-2-5> CSRD의 적용 및 시행

구분	2025 (FY2024)	2026 (FY2025)	2027 (FY2026)	2028 (FY2027)	2029 (FY2028)
▶ NFRD 적용 대상 기업 (근로자 > 500명)	●	●	●	●	●
▶ NFRD 미적용 대상 기업		●	●	●	●
▶ 대기업		●	●	●	●
▶ 상장 중소기업(SMEs) 기업			●	●	●
▶ 제3국 기업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

\* 상기표는 Directive(EU) 2022/2464의 제5조(Transposition)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 EU 회원국의 NFRD → CSRD로 전환(transposition) 현황

□ EU 회원국은 2024년 7월 6일까지 CSRD 이행을 위해 동 법률을 자국법으로 도입해야 함

- 글로벌 로펌인 로프스 앤 그레이(Ropes & Gray)에 따르면, 2024년 7월 6일 기준 CSRD 지침을 자국법으로 도입한 EU 회원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로 모두 10개 국가임
- 스페인, 크로아티아, 폴란드는 CSRD 도입을 위한 논의 단계(consultation held)에 있으며, 네덜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는 입법 단계(implementing legislation introduced)에 있음

〈표 2-2-6〉 EU 회원국의 단계별 CSRD 전환 현황 (2024.7.6.기준)

국가	논의 단계 (Consultation held)	입법 단계 (Implementing Legislation Introduced)	자국법 도입 (Implementing Legislation Approved)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불가리아		●	
스웨덴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일랜드			●
에스토니아		●	
이탈리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출처: Ropes & Gray CSRD Transposition Tracker, 저자 정리

\*\*음영처리한 기업은 CSRD 체제로 전환이 완료된 국가를 의미함

• CSRD 실행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체크리스트

- CSRD는 기존 EU내 공시제도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므로(<표 2-2-9> 참고), 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① 기존 보고 체계와 CSRD 체계를 비교 및 점검하여, ② 이미 준수하고 있는 항목 및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③ 또한, 협력업체(suppliers)를 비롯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가공 절차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
- <표 2-2-8>과 같이 CSRD 이행 및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표 2-2-7> CSRD 실행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향

① 보고 및 공시 전략	② ESRS 기준에 따른 정보공시	③ 정보 수집
· 現 보고 체계와 CSRD 체계 비교 및 점검 - 이중 중대성 평가 - 공급망 실사 체계 수립 - 지속가능성 성과 측정 방법 개발	· ESRS 기준과 現 보고 체계의 관련성 확인 - 이미 준수하고 있는 항목 체크 - 보완이 필요한 항목 체크	· 협력업체 등의 정보 수집 관련 절차 마련 - 정보 수집 · 가공 절차 수립 - 정보 분석 방법론 수립

\*출처: worldfavor, 2023, "CSRD and ESRS - A guide to get you started"

<표 2-2-8> CSRD 실행을 위한 기업의 체크리스트

▶ CSRD 체제가 향후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에 CSRD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절차 중 CSRD를 준수하기 위해 유지 또는 삭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ESRS 보고/공시 요건 중 회사와 관련 있는 보고사항은 무엇인가?
▶ ESRS 보고/공시 요건 중 회사와 관련이 없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에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
▶ 매년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할 것인가?
▶ 협력업체(suppliers)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접근할 것인가?

\*출처: worldfavor, 2023, "CSRD and ESRS - A guide to get you started"

• CSRD 실행을 위한 제3국(EU 비회원국)의 고려사항

- CSRD는 형평성(equivalence) 측면에서 EU 회원국 이외에 EU 비회원국에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함
- 즉, ① EU 역내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② 지점(branch) 또는 자회사(subsidiary)의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인 경우, ③ EU 자본시장에 상장된 자회사(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인 기업은 EU 회원국이 아니라도 CSRD를 준수해야 함

〈표 2-2-9〉 CSRD와 EU 법률과의 관계성<sup>9)</sup>

구분		
CSRD	① 공시	· EU Taxonomy Regulation
		· Accounting Directive / Transparency Directive / Audit Directive / Audit Regulation
		· EU Climate Transition and EU Paris-Aligned Benchmarks / Sustainable Finance Disclose Regulation /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② 실사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European Climate Law
③ 검증 (감사)	· Accounting Directive / Audit Directive / Audit Regulation	

9)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관계성이란 분석 대상 법률이 기타 EU 법률과의 관련이 있거나(interconnections)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2-3.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 • CSDDD 제정 배경 및 목적<sup>10)</sup>

- 오늘날 기업은 대체로 복잡하게 운영되어 광범위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으나,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의 운영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특히 공급업체(suppliers)와 하위 공급업체(sub-suppliers)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EU 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공급망(supply chain) 내에서 인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역시 EU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업 공급망(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특히, 이 지침에서 의미하는 실사란 기업이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프랑스(2017), 노르웨이(2022), 독일(2023) 등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었기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sup>11)</sup>
  - \* 프랑스는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Vigilance Law)」를 제정, 노르웨이는 「The Norwegian Transparency Act」를 제정, 독일은 「Das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LkSG)」를 제정함
  - \* 현재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국가 현황은 아래 [참고 2.]를 참고 바람
  - 즉, 국가별로 법안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여 역내 공급망 실사를 위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 기업들의 참여 또한 저조하였음
  - 이에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공급망 실사법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됨

10) Directive(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를 참고하여 정리함

11) Cleary Gottlieb, 2024,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Germany, France and the EU: Overview

[참고 2.]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제정(채택) 현황

국가	관련법
호주	Australian Modern Slavery Act (2019)
캐나다	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 (2023)
프랑스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2017)
독일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2021)
인도	Indian Child Labour Act (2016)
멕시코	Mexican Forced Labour Regulation (2023)
네덜란드	Dutch Child Labour Due Diligence Bill (2019)
노르웨이	Transparency Act (2021)
스위스	Due Diligence and Transparency in relation to Minerals and Metals from Conflict-Affected Areas and Child Labour(2021)
영국	Modern Slaver Act (2015)
미국	Uyghur Forced Labor Prevent Act (2021)

\* 출처: Worldfavor

- CSDDD의 핵심인 공급망 실사는 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②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③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적 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sup>12)</sup>

• CSDDD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 2022년 2월 23일, 유럽집행위원회는 CSDDD를 발의하였으며 2024년 7월 5일 최종 공포됨 (<표 2-3-1> 참고)
- 2023년 12월, CSDDD 초안에 대해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political agreement)가 있었으나 2024년 2월 28일 27개 EU 회원국 중 13개국만 기권, 1개국이 반대(기업의 과도한 부담 우려)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음
  -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24년 5월 EU 회원국간 CSDDD 최종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CSDDD 최종안에 담긴 주요 변경 사항은 ① 지침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축소 그리고 ② CSDDD의 전환 유예기간 및 단계적 적용 및 시행, ③ 제재 수위(민사책임) 완화, ④ 기후 전환 계획 채택 의무화 면제 조항 추가로 요약될 수 있음
  - ① 지침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축소: CSDDD의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이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및 순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에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및 순 매출액 4억 5천만 유

12) 유엔 지침과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운영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Identifying), 예방(preventing), 완화(mitigation)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며, 공급망 실사 개념은 이미 ILO 삼자 선언에서 다루고 있음

로로 축소됨

- ② CSDDD의 전환 유예기간 및 단계적 적용 및 시행: EU 회원국들은 CSDDD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 시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기업의 근로자 수 및 순 매출액에 따라 적용 및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음
  - ③ 제재 수위(민사책임): 최종 합의 단계에서 논란이 된 민사책임의 경우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5년의 공소시효(a five-year limitation), 피해자가 NGO나 노동조합(trade union)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등이 새로이 포함됨
  - ④ 기후 전환 계획 채택 의무화 면제 조항 추가: CSDDD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중 하나는 기후 전환 계획 채택의 의무화로, 이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임. 만약 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 전환 계획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후 전환 계획 채택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의무가 면제됨
- 이 지침은 2024년 7월 25일부터 효력이 생기며(enter into force),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자국법으로 도입해야 함 [CSDDD 제37조]
- CSDDD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는 2027년 7월 25일부터이며, 이후 2029년 7월 25일까지 기업의 근로자 수 및 글로벌 순매출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표 2-3-1〉 CSDDD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22.2.23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SDDD 발의
2024.2.28	CSDDD, EU 상주대표회의(COREPER)에서 부결 (14개국 유보, 13개국 기권, 1개국 반대)
2024.3.15	EU 회원국간, CSDDD 최종 수정안에 동의
2024.4.2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CSDDD 최종 승인
2024.5.24	유럽이사회(Council), CSDDD 최종 승인
2024.7.5	CSDDD 최종 공표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
2024.7.25	CSDDD 최종 발효(entry into force)
2026.7.25	EU 회원국, CSDDD 도입 시기 (transpose the CSDDD into their national law)
2027.7.25	CSDDD 적용 (* 단, 2027년 7월 25일부터 2029년 7월 25일까지 기업의 근로자 수 및 전 세계 순매출액에 따라 순차 적용)

\*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sion.europa.eu)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 CSDDD 주요 내용(1): 공급망 실사 의무 및 기후 전환 계획 채택

- CSDDD는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실질적(actual)이고 잠재적인(potential)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기업이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EU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CSDDD 제1조]
- CSDD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 의무와 기후 전환 계획(climate transition plan)을 채택해야 함
- CSDDD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절차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제시되어 있는 실사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미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은 CSDDD를 준수 및 시행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표 2-3-2> 참고)
- **(공급망 실사)** CSDDD의 공급망 실사 절차는 모두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CSDDD 제5조]
  - ① 실사 정책 및 관리 시스템 통합: 협력사를 포함하여 실사 수행을 위한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단계 [CSDDD 제7조]
  - ②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 [CSDDD 제8조 및 제9조]
  - ③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최소화: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이미 예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마련 [CSDDD 제10조 및 제11조]
  - ④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또는 시정 조치 요구: 회사가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켰거나 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가 구제 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CSDDD 제12조]
  - ⑤ 이해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참여 수행: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CSDDD 제13조]
  - ⑥ 고충 처리 절차 마련: 회사(공급망 포함)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함 [CSDDD 제14조]
  - ⑦ 실사 정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모니터링: 기업은 실사 수행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실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CSDDD 제15조]
  - ⑧ 실사 결과에 대한 보고: 실사 절차,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업 홈페이지 또는 사업 보고서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함 [CSDDD 제16조]

〈표 2-3-2〉 실사(due diligence) 단계: CSDDD vs. OECD

구분	CSDDD <sup>1)</sup>	OECD <sup>2)</sup>
1단계	실사 정책 및 관리 시스템 통합 (integrating due diligence into their policies and risk management systems)	실사 정책 및 관리 시스템 내재화 (embedd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to policies and management systems)
2단계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identifying and assessing actual or potential adverse impacts)	기업의 운영이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identifying and assessing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associated with the enterprise's operations)
3단계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최소화 (preventing and mitigating potential adverse impacts, and bringing actual adverse impacts to an end and minimising)	부정적 영향의 종료, 예방 및 완화 (ceasing, preventing and mitigating adverse impacts)
4단계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또는 시정 조치 요구 (providing remediation for actual adverse impacts)	종료, 예방 및 완화에 대한 결과 추적 tracking implementation and results
5단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참여 수행 (carrying out meaningful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부정적 영향의 개선 정도 (communicating how impacts are addressed)
6단계	고충 처리 절차 마련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notification mechanism and a complaints procedure)	필요시, 협력 또는 구제 방안 제공 (providing for or co-operating in remediation when appropriate)
7단계	실사 정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모니터링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due diligence policy and measures)	
8단계	실사 결과에 대한 보고 (publicly communicating on due diligence)	

<sup>1)</sup> Directive(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sup>2)</sup>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참고하여 정리

○ (공급망 범위) CSDDD는 공급망 범위(또는 활동)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CSDDD 제3조 1항(g)] (〈표 2-3-3 참고〉)

- 업스트림은 원자재 공급, 제품 또는 제품 부품의 설계 및 제조, 운송, 저장 및 공급,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생산 활동을 의미함
- 다운스트림은 회사 제품의 유통, 운송 및 보관 활동을 의미하지만, 무기, 화약 또는 군수품(war material) 등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제품의 유통, 운송 및 보관은 다운스트림에 속하지 않음

〈표 2-3-3〉 공급망 범위 (또는 활동)

구분	공급망 범위(또는 활동)
업스트림	원자재 공급, 추출, 소싱, 제품 또는 제품 부품의 설계 및 제조, 운송, 저장 및 공급, 제품/서비스 개발 및 생산
다운스트림	해당 회사 제품의 유통, 운송 및 보관 (단, 무기, 화약 또는 군수품 등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유통, 운송, 및 보관 범위에 미포함)

\* CSDDD 제3조 1항(g) 참고

- (기후 전환 계획) CSD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법적 의무를 지니며, 미준수 시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후 전환 계획에는 1)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2)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 1.5°C 제한, 3)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기업은 2030년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목표를 세우고,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Scope1, 2, 3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함
  - CSRD를 준수하여 이미 기후 전환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기후 전환 계획 채택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 CSDD 주요 내용(2): CSRD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CSDD - CSRD 유사점) CSDD와 CSRD는 상호 보완적인 법률로 단일 기업만이 아닌 기업의 공급망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음
  - 즉, CSDD와 CSRD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촉진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두 법률 모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CSDD와 CSRD를 준수 및 이행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CSDD - CSRD 차이점) 다만, CSRD가 지속가능성 보고 또는 공시의 질적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CSDD는 실사를 통한 환경 및 인권 보호 강화가 주된 목적임
  - CSRD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투명한 보고 또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CSDD는 지속가능성 이슈 해결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행동(실사)을 요구함
  - CSRD와 CSDD 모두 EU 회원국 및 EU 비회원국에 적용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EU 비회원국에 적용 시 CSRD는 EU 역내에서의 사업 영위 여부를 중시하지만, CSDD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됨
- (미준수 시 제재: CSDD) CSDD는 민사책임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의 최대한도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CSDD 제27조 및 제29조]
  - 단, CSDD를 자국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EU 회원국별 제재 및 수위 설정은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CSDD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실사 이행 의무와 함께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차등을 두어 적용되지는 않으며, 공적 및 사적 제재 또한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게 동등하게 적용됨

□ (미준수 시 제재: CSRD) CSRD의 경우 미준수 시 제재에 대한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CSRD를 자국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EU 회원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제재 수위 및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sup>13)</sup>

○ 가장 먼저 CSRD를 자국법으로 도입한 프랑스는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제3자 검증 미준수 및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5만 7,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년의 징역형 및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미발간하는 경우 공공조달 계약(public procurement contracts)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표 2-3-4〉 CSDDD vs. CSRD

구분	CSDDD	CSRD
핵심 주제 (focus)	· 기업의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 지속가능 정보의 보고/공시 (Reporting / Disclosure)
목적	· 환경 및 인권 보호 강화	· 지속가능성 보고/공시의 질적 개선
적용 대상	· EU 회원국 및 EU 비회원국	
주요 내용	① 공급망 실사의 의무화: 인권 및 환경 - 공급망 범위 ▶ 업스트림: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제조, 설계 등 ▶ 다운스트림: 유통 및 운송, 제품 보관 등 ②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식별 및 해결 <sup>1)</sup> - 인권 실사 항목: 생명권, 아동 노동 금지 등 - 환경 실사 항목: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등 ③ 파리협약 및 유럽기후협약 달성을 위한 계획 채택 및 시행 의무 부여 ④ 기후 전환 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채택	① 공급망 실사의 의무화 ② 매년 지속가능성 정보(ESG 성과 등)의 보고 ③ 기업 전체 공급망까지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④ 이중 중대성 평가 ⑤ 제3자 감사 및 검증 의무 ⑥ 기업의 형태 및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유사점	· 주로 아래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미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CSRD 및 CSDDD를 이행시 용이 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②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단일 기업만이 아닌 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 ① CSDDD: 지속가능성 이슈 해결을 위한 <b>기업의 실질적 행동(action)</b> 이 요구됨 ② CSRD: 지속가능성 이슈 해결을 위한 <b>기업의 투명한 보고/공시</b> 가 요구됨	
차이점	· 적용 대상: 전 세계 기업 (global application) · 환경· 사회적 책임 제고	· 적용 대상: EU 역내에서의 사업 영위 여부 (EU-centric) ·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
미준수 시 <sup>2)</sup>	· 민사책임 및 행정적 제재 부과 가능 · 벌금의 최대 한도: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 설정 · 중지 및 적절한 조치 (cease or adopt certain conduct) · 벌금 부여 (※ 제재 수위는 회원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프랑스의 경우] · 제3자 검증 미준수 및 감사 방해 시 → 최대 €357,000 유로의 벌금, 5년의 징역형 및 형사처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발간 시 → 공공조달 계약(public procurement contracts)에서 배제 (※ 제재 수위는 회원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저자 정리

<sup>1)</sup> 구체적인 인권 및 환경 실사 항목은 「Directive(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의 Annex Part I과 Part II에 제시되어 있음

<sup>2)</sup> 미준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CSDDD와 달리 CSRD는 미준수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EU 회원국들이 CSRD를 자국법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제재 수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3) <https://www.novata.com/resources/blog/csr-d-unpacked-enforcement-compliance-and-penalties/>

• CSDDD의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CSDDD는 EU 회원국과 EU 비회원국에 모두 적용되는 EU 지침으로, 전년도 회계 기준으로 2년 연속 적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음 [CSDDD 제2조]
- **EU 회원국:** ① 전년도 회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업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 순 매출액(a net worldwide turnover)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또는 ② 연결 기준으로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모기업(ultimate parent companies of a corporate group), ③ 전년도 회계기준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8,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EU 비회원국:** 근로자의 수는 고려되지 않으며 ① 전년도 회계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또는 ② 연결 기준으로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모기업, ③ 전년도 회계 기준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8,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SMEs)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제재(public enforcement) 또는 민사책임(civil liability)을 물을 수 없음
  - 그러나 공급망 관계에 놓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라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실사 과정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음

〈표 2-3-5〉 CSDDD의 적용 기준 및 대상

Panel A.

구분	적용 기준 <sup>1)</sup>	
	① 근로자 수	② 순매출액 (net turnover worldwide) <sup>2)</sup>
▶ EU회원국 (약 6,000社)	≥ 1,000명	≥ EUR 450 mil
▶ EU비회원국 (약 900社)	-	≥ EUR 450 mil
▶ 중소기업(SMEs) <sup>3)</sup>	-	-

<sup>1)</sup> 전년도 회계 기준

<sup>2)</sup> 순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Directive 2013/34/EU의 제2조 (5) 또는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Regulation (EC) No 1606/2002에 명시되어 있음

<sup>3)</sup> 초소형기업(Micro companies)을 포함한 중소기업(SMEs)은 CSDDD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공급망에 놓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CSDDD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Panel B.

구분	적용 기준 <sup>3)</sup>	
	① 로열티 수익	② 순매출액 (net turnover worldwide)
▶ EU회원국 - 프랜차이즈	≥ EUR 22.5 mil	≥ EUR 80 mil
▶ EU비회원국 - 프랜차이즈	≥ EUR 22.5 mil	≥ EUR 80 mil
▶ 중소기업(SMEs) <sup>1)</sup>	-	-

<sup>3)</sup> 전년도 회계 기준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및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적용 및 시행) CSDDD는 2027년 7월 25일부터 적용 및 시행되며, 기업의 근로자 수 및 전 세계 순매출액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및 시행됨 (<표 2-3-6> 참고) [CSDDD 제37조]
  - 근로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15억 유로인 기업은 2028년(회계연도 2027년)부터 CSDDD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공급망 실사 및 기후 전환 계획 채택 등-을 준수 및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 근로자 수가 3,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9억 유로인 기업과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4.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은 각각 2029년(회계연도 2028년)과 2030년(회계연도 2029년)부터 의무 사항을 준수 및 공시해야 함

<표 2-3-6> CSDDD의 적용 및 시행

구분	2028 (FY2027)	2029 (FY2028)	2030 (FY2029)
▶ 근로자수 > 5,000명, 전 세계 순매출액 > EUR 1,500 mil	●	●	●
▶ 근로자수 > 3,000명, 전 세계 순매출액 > EUR 900 mil		●	●
▶ 근로자수 > 1,000명, 전 세계 순매출액 > EUR 450 mil			●

\*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CSDDD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기대 효과) 유럽연합(EU)은 CSDDD 도입으로 이해관계자, 기업, 개발도상국별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인권(노동자) 보호와 신장,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업의 정보 제공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파악, 기업 운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안 제공 기대
  - 기업: EU내 ESG 공시 관련 제도 간 상호운용가능성 확보, 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근로자의 신뢰 제고,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최소화 가능, 투자 유치에 효과적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인권 및 환경 보호 개선 가능, 가치사슬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 유치 가능, 지속가능성 이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삶의 질 개선

<표 2-3-7> CSDDD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이해관계자 ( citizens )	기업 ( companies )	개발도상국 ( developing countr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노동자) 보호 ↑</li> <li>· 기업 신뢰도 ↑</li> <li>· 가용정보 증가로 투명성 제고</li> <li>·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사법적 제재)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내 관련 법률과의 조화</li> <li>· 법적 확실성,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li> <li>· 소비자 및 근로자의 신뢰 제고</li> <li>·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li> <li>· 투자 유치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및 환경 보호 ↑</li> <li>· 가치사슬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투자 지원</li> <li>· 지속가능성 관련 관행 개선</li> <li>· (지속가능성 정보의) 국제표준 채택 ↑</li> <li>· 삶의 질 개선</li> </ul>

\*출처: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저자 정리

## • 기타 고려 사항<sup>14)</sup>

- **(비용)** CSDDD에 적용을 받는 기업은 실사 프로세스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공급망을 비롯하여 기업이 CSDDD를 준수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
- **(EU 가이드라인 확인)** CSDDD는 공급망 실사 대상 및 범위, 실사 항목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나 지침에 명시된 대부분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짐
  -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CSDDD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실사 의무를 준수·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목별 가이드라인-①일반 가이드라인(general guidelines), ②업종별 가이드라인(sector-specific guidelines), ③특정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pecific adverse impacts)-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임 [CSDDD 제19조]
    - 우선,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 26일까지 실사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 및 모범사례, 부문별 리스크 요소(분쟁 및 고위험 지역, 지리학적 요소, 제품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지침, 가용 데이터 원천 및 관련 규정, 디지털 도구 및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참고사항을 마련할 예정임 [CSDDD 제19조 3항]
    - 또한, 2027년 3월 31일까지 EU 집행위원회는 실사 내용,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과 그 기준을 정할 계획임 [CSDDD 제16조 3항]
    - 이외에 2027년 7월 26일까지는 기업 간 정보 공유 방법, 기후 전환 계획에 대한 실무 가이드런스(practical guidance), 영업비밀 보호, (잠재적) 보복조치 방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CSDDD 제19조 3항]

14) 「Directive(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및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참고

## 2-4.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 SFDR 제정 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EU)은 ①그린워싱 방지, ②금융시장참여자들(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이하 FMP)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책임 부여, ③유럽 자본시장 내 지속가능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 법률(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을 제정함
- 이 법률의 핵심은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 의사 결정 시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투자 기회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임
  - 즉, 금융회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 활동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 또한, 이들의 투자가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하며, 이 경우 기술적 세부 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이하 RTS)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해야 함<sup>15)</sup> ([참고 3.] 참고)
  - 2023년 6월부터는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le Adverse Impact, 이하 PAI)을 공시해야 함
    - 주요 부정적 영향(PAI)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인권 등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의미함
  - 상기 정보는 기관별, 펀드 단위별로 공시가 이루어 짐

#### [참고 3.] SFDR과 기술적 세부 규칙(RTS)

2021년 3월 10일, SFDR의 1단계 공시가 시행되었으며, 위임법 시행(2023년 1월 1일)에 따른 기술적 세부 규칙(RTS) 마련으로 현재 2단계 공시가 시행 중임.

- ▶ 기술적 세부 규칙: 금융회사가 투자활동 과정에서 공시해야 하는 18개의 공시 지표로 구성
  - 14개 지표 = 환경 지표(9개)+사회지표(5개)
  - 4개 지표 =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시 반영해야 하는 지표 2개 (환경지표(1개),사회지표(1개))
    - = 부동산의 투자 의사 결정 시 반영해야 하는 지표 2개 (환경지표(2개))

\* 출처: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15) 금융상품(또는 펀드)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론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관련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임

• SFDR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 2018년 5월 2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SFDR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률은 2021년 3월 10일 최종 시행됨 (〈표 2-4-1〉 참고)
- 2022년 7월 25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SFDR의 위임법(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88)을 마련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함
  - 상기 위임법안은 SFDR에서 정하고 있는 정확한 공시 내용, 방법론, 공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금융상품간 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23년 2월 17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위임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위임법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함
  - 개정 위임법은 EU Taxonomy 위임법안인 Climate Delegated Act(CDA)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를 반영하여 투자 포트폴리오가 가스 및 원자력 관련 활동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공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시장참여자(FMPs)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럽 감독기관인 유럽은행관리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홈페이지를 통해 편집 가능한 버전의 공시 템플릿을 제공함

〈표 2-4-1〉 SFDR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18.5.25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SFDR 발의
2021.3.10	SFDR 최종 시행(come into application)
2022.7.25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임법(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88) 공표
2023.1.1	위임법 시행 (started to apply)
2023.2.17	위임법(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88) 수정안(Delegated Regulation (EU) 2023/363) 공표
2023.2.20	(수정) 위임법 시행

\*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sion.europa.eu)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 SFDR 주요 내용(1)<sup>16)</sup>

- **(제1조: 법률의 주제)** SFDR은 금융시장참여자와(FMPs) 금융시장 전문가(financial advisers)의 투자 활동 시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또한 지속가능성 이슈 측면에서 이들의 투자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17)18)</sup>
- **(제3조: 지속가능성 리스크 정책의 투명성)** 금융시장참여자와 금융시장 전문가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통합하는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제4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는지 여부, 실사(due diligence) 정책을 마련하여 투자활동의 규모와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고려했는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 및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 파리협정 등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업 행동 강령 및 실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적용 대상)** 2021년 6월 30일부터 ①대차대조표 기준으로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금융회사, ②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제3조의 (7)에 언급된 대규모 그룹의 모회사인 금융회사, ③금융시장 전문가는 상기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제5조: 지속가능성 리스크 통합에 따른 보상 정책의 투명성)** 금융시장참가자와 금융시장 전문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보상 정책에 어떻게 통합시킬지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제6조: 지속가능성 리스크 통합의 투명성)** 금융시장참가자와 금융시장 전문가는 홈페이지에 1)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투자 결정에 통합되는 방식, 2)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투자 상품(또는 금융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지를 공시해야 함
  - 만약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됨
- **(제7조: 금융상품 단위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금융시장참가자와 금융시장 전문가는 금융상품이 지속가능성 요인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이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공시해야 함
- **(제8조: 계약 전 ESG 특성 촉진 펀드의 투명성)**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사회·환경 특성을 촉진하는 상품이고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이 우수(good)한 경우 사회·환경 특성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설명해야 함

16) 공시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SFDR 제2조는 SFDR 법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어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법률 설명 과정에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함

17) 금융시장참여자(FMPs)란 보험회사(insurance undertaking), 연기금, 자산운용사 및 투자회사(investment firm), 신용평가사(credit institution), 대체투자 펀드매니저(AIFM) 등을 의미함 [SFDR 제2조 (1) 참고]

18) 금융시장 전문가(financial adviser)란 보험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인(insurance intermediary), 보험회사(insurance undertakings) 및 투자자문사 등을 의미함 [SFDR 제2조 (11) 참고]

- 만약 투자 상품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reference benchmark)가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수가 사회·환경 특성과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지 또한 설명해야 함
- **(제9조: 계약 전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의 투명성)**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수가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 여부, 이 지수가 전체 시장 지수(broad market index)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함
  - 만약 금융상품이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만 참조할 벤치마크 지수가 없는 경우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함
  - 금융상품이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면, 지구 온도 상승 제한이 목적인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탄소 배출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제10조: 사회·환경 특성 촉진 펀드 및 지속가능한 투자 펀드의 투명성)** 사회·환경 특성 펀드 및 지속가능한 투자 펀드의 목적에 대한 설명, 사회·환경 특성 및 지속가능한 특성을 평가, 측정 모니터링 수 있는 방법론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위의 방법론에는 데이터 소스, 기초 자산(underlying assets)에 대한 심사 기준, 사회·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도 포함됨
- **(제11조: 사회·환경 특성 촉진 펀드 및 지속가능한 투자 펀드의 주기적 공시)** 제8조에서 언급하는 금융상품(또는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사회·환경 특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정기 보고서(periodic reports)에 공시해야 함
  - 만약 제9조에서 언급하는 금융상품(또는 펀드)의 경우, 사회·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가 해당 상품(또는 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벤치마크 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수와 시장 지수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또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 **(제12조: 공시에 대한 검토)** 금융시장참가자와 금융시장 전문가는 제3조,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정보가 모두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만약 공시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제15조: IORP 및 보험중개사의 투명성)** IORP 및 보험중개사 역시 이 법률의 제3조부터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홈페이지 및 정기 보고서에 동일하게 공시해야 함
- **(제17조: 면제 조항)** 이 법률은 EU내 투자기반 보험상품인 IBIP와 관련하여 보험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사(insurance intermediaries)나 투자회사(investment firms)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해당 규정을 자국법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위의 경우 면제 조항으로 넣지 않을 수 있음
- 요약하여 설명하면, SFDR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펀드를 분류하고 주요 부정적 영향(PAI)을 설명·공시함으로써 상기 분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제6조 일반 펀드) 제6조는 일반 펀드(非 ESG펀드)로 ESG 고려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임

- (제8조 일반 ESG 펀드) 제8조는 ESG 요소를 우선순위로 하는 일반 ESG펀드를 의미하며, 해당 금융 상품(또는 펀드)이 EU Taxonomy의 분류체계에 부합해야 함
- (제9조 지속가능성 펀드) 제9조는 지속가능성 펀드를 의미하며 ESG요소 및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펀드로 지속가능성 펀드 또한 EU Taxonomy 분류체계에 부합해야 함

〈표 2-4-2〉 SFDR 펀드별 비교: 제6조, 제8조, 제9조

구분	제6조 일반 펀드 (no sustainability focus)	제8조 일반 ESG 펀드 (Light green funds)	제9조 지속가능성 펀드 (Dark green funds)
▶ 목적	·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지 않음)	· 기업의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 지속가능 정보의 보고/공시
▶ 펀드 유형	· 일반 펀드 (ESG요소 고려 여부는 자율)	· ESG 요소를 우선순위로 하는 펀드	· ESG 요소+환경·사회 영향 고려하는 펀드
▶ 라벨링	· 비(非) ESG 펀드로 명명	· 라벨링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사항 X	· 라벨링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사항 X
▶ ESG 투자전략	N	Y	Y
▶ 분류체계	-	· EU Taxonomy alignments	· EU Taxonomy alignments
▶ DNSH 준수 <sup>1)</sup>		Y	Y
▶ 공시 항목	· ESG요소를 고려 여부 공시 · 미고려 시, 이에 대한 사유 설명	· ESG 요소 고려 기준 · ESG 투자 정책 · ESG 투자 방법론	· ESG 요소 고려 기준 · ESG 투자 정책 · ESG 투자 방법론

\* 각각의 법안, apiday.com, fairr.org, ImpactNexus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sup>1)</sup> Do No Significant Harm

• SFDR 주요 내용(2): CSRD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FDR과 CSRD는 상호보완적인 법률로 모두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SRD는 EU Taxonomy 분류에 따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SFDR은 금융시장참여자(FMPs)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EU Taxonomy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CSRD는 SFDR 보고서에 공시되는 정보의 일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SFDR과 관련성이 높음
  - 일례로, CSRD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금융시장참여자(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 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리스크와 투자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SFDR 주요 내용(3): EU Taxonomy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FDR과 EU Taxonomy와의 관련성) SFDR은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로 고안된 투자상품이 EU Taxonomy 제6조(환경 목표)에 언급되어 있는 6가지 목표 가운데 어디에 기여하는지, 투자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의무를 금융시장참여자들에게 부여함
- SFDR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펀드를 분류해야 함
  - 단, EU Taxonomy에 따른 금융상품(또는 펀드)의 분류 및 관련 정보 공시는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또는 펀드)에만 적용이 됨

〈표 2-4-3〉 EU Taxonomy vs. SFDR vs. CSRD

구분	EU Taxonomy	SFDR	CSRD
핵심 주제 (focus)	· 지속가능활동에 대한 정의 및 분류	· 기업의 공급망 실사 (Due diligence)	· 지속가능 정보의 보고/공시
목적	·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보호	·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	· 지속가능성 보고/공시의 질적 개선
대상	· 상장사(금융회사 포함)	· 금융회사(운용사, 연기금, 투자회사 등)	· 상장사(금융회사 포함)
공통점	· 지속가능성 이슈 해결 및 지속가능한 경제 달성		
상호 연관성	· EU Taxonomy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금융상품(또는 펀드)을 분류 및 공시		
		· EU Taxonomy의 분류체계와의 적합성 및 ESG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공시	

\* 저자 정리

## [참고 4.] SFDR의 법률 구성

조항	
Article 1	Subject-matter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Transparency of sustainability risk policies
Article 4	Transparency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at entity level
Article 5	Transparency of remuneration policies in relation to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risks
Article 6 (no sustainability focus)	<b>Transparency of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risks</b>
Article 7	Transparency of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at financial product level
Article 8 (light green fund)	<b>Transparency of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or social characteristics in pre-contractual disclosures</b>
Article 9 (dark green fund)	<b>Transparency of sustainable investments in pre-contractual disclosures</b>
Article 10	Transparency of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or social characteristics and of sustainable investments on websites
Article 11	Transparency of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or social characteristics and of sustainable investments in periodic reports
Article 12	Review of disclosures
Article 13	Marketing communications
Article 14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15	Transparency by IORPs and insurance intermediaries
Article 16	Pension products covered by Regulations (EC) No 883/2004 and (EC) No 987/2009
Article 17	Exemptions
Article 18	Report
Article 19	Evaluation
Article 20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 2-5. EU Green Bonds Regulation (GBR)

### • GBR 제정 배경 및 목적<sup>19)</sup>

- 기후 중립,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 공정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EU 역내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 이에 유럽은 지난 2020년부터 「Sustainable Europe Investmen Plan.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구상하여, 녹색채권(environmentally sustainable bonds)에 대한 기준(standards) 마련 계획을 수립함
  - 이는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채권의 라벨(labeling)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식별(identificatio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녹색채권은 자원 효율적/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environmentally sustainable technologies) 및 에너지, 운송 및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발행할 수 있음
- 그러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공통된 정의 또는 개념이 EU 역내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녹색채권 투자로 인해 발생한 투자 수익이 파리협약에 명시된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 즉, 그린워싱에 따른 녹색채권인지 지속가능한 경제 달성에 부합하는 녹색채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 이는 EU 지역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국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짐
    - 녹색채권 발행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경우 기업별·국가별로 발행된 녹색채권에 대한 정보 비교가 어렵고, 정보비대칭에 따른 잘못된 투자로 친환경 위험(그린워싱, 왜곡된 투자 결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따라서, EU 녹색채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채권별 정보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EU 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2021년 7월 6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녹색 채권 법률(EU Green Bonds Regulation, 이하 GBR)을 발의함
  - 이 법률은 녹색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 또는 국가에게 EU 녹색채권의 라벨 사용 규제, 채권 투자금의 사용처, 채권 투자금이 EU Taxonomy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사용되었는지, 환경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음

19) 「Regulation (EU) 2023/26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을 참고하여 정리

• GBR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 2020년 6월 12일, 유럽연합은 유럽 녹색채권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6일 「European Green Bond Standard (Regulation(EU) 2023/2631)」를 발의함
- 2023년 2월 28일, 상기 법률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정치적 합의를 거쳐 2023년 11월 30일 최종 공포됨
- 이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이 법률의 효력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발생함

〈표 2-5-1〉 GBR 입법 추진 및 진행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20.6.12	유럽연합, 유럽 녹색채권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 시작
2021.7.6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GBR 발의
2023.2.28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GBR에 대한 정치적 합의
2023.11.30	GBR, 최종안 공포
2024.12.21	GBR, 최종 시행 및 유럽 집행위원회 GBR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시 템플릿 마련 예정 [GBR 제20조]

\*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commission.europa.eu)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GBR 주요 내용<sup>20)</sup>

- 이 법률은 EU 녹색채권(EuGB) 명칭을 사용하려는 채권발행자(기업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일된 요구사항을 제시함<sup>21)</sup>
- (EU 녹색채권 투자금의 사용) EU 녹색채권의 투자금(proceeds)은 환경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재)투자)되어야 함 [GBR 제4조]
  - 이는 금융자산이 아닌 ①고정의 유형 또는 무형자산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장기 자산(long-term assets)에 해당하기 때문임 (단, EU Taxonomy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고정자산이어야 함)
  - 또한, ②금융자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녹색채권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연속 금융자산에 연속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함 (단, 해당 금융자산의 투자금은 (직간접적으로) 후속 금융자산을 통해 EU Taxonomy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에 할당되어야 함)
    - 채권발행자는 외부검토(external reviewers to review)를 통해 채권 투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보장해야 함
  - 그다음으로, ③EU 녹색채권의 투자금을 사용하여 가계 자산 및 지출(assets and expenditure of

20) 법률의 내용 중 채권발행자가 공시 또는 설명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정리함

21) 즉, EU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EuGB를 발행하려는 모든 국가, 기업에 적용됨

households)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EU 녹색채권의 투자금을 사용하여 EU Taxonomy 분류체계를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자본 및 운영지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투자금 사용의 유연성) 제4조에 따라 EU 채권 투자금은 EU Taxonomy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제5조에서는 투자금 사용에 대해 유연성(flexibility)을 적용하고 있음
  - 즉, 현 시점에서 EU Taxonomy 분류체계에 없어서 EU Taxonomy 위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적 충족 요건(TSC)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법률의 목적에 상응하는 국제 규준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의 경우는 채권 수익의 최대 15%를 할당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EU 녹색채권 발행 전(前) 절차) 채권발행자는 EU 녹색채권을 발행하기에 앞서 Annex I.에 제시된 현황표(fact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GBR 제10조]
  - Annex I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표 2-5-2>와 같음

**<표 2-5-2> Annex I 주요 내용**

주요 내용
<b>1.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b>
▶ 채권발행자 정보, 발행 채권 정보, 제3자 검증 관련 정보 등
<b>2. 주요 정보 (Important Information)</b>
▶ Regulation (EU) 2023/2631를 준수하여 EU 녹색채권 지정(designation) 여부, 제5조(기술 심사 기준(TSC))을 제외하고 분류 요건을 준수하는 경제활동에 녹색채권 투자금의 최대 15%를 할당할 수 있음)에 관한 내용
<b>3. 환경 전략 및 정의 (Environmental strategy and rationale)</b>
▶ ① 개괄, ② 자산(assets), 매출액(turnover), 자본지출(CapEX), 운영비용(OpEX) 등 주요 핵심 성과 지표, ③ 기후 전환 계획 등
<b>4. 채권수익 사용 계획 (Intended allocation of bond proceeds)</b>
▶ ① EU 분류체계와의 (구체적인) 적합성, ② TSC 미충족한 활동, ③ 수익배분 절차 및 계획
<b>5. 채권수익과 환경적 영향 (Environmental impact of bond proceeds)</b>
▶ 채권 수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추정(estimate)
<b>6. 공시 정보 (Information on reporting)</b>
▶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발행자의 홈페이지 주소, 보고 기간 등
<b>7. 자본지출 계획 (CapEX plan)</b>
▶ 자본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 등
<b>8. 기타 정보 (Other relevant information)</b>

- (할당보고서 작성) 채권 발행 후(後), 채권발행자는 1년마다 Annex II.를 참고하여 할당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GBR 제11조]
  - Annex II.는 Annex I.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며, Annex I.의 4.채권수익 사용 계획 (Intended allocation of bond proceeds) 대신, Annex II.에서는 4.채권수익 사용 또는 할당 (Allocation of bond proceeds) 내역을 설명해야 함 (<표 2-5-3> 참고)
  - Annex I.과 달리 Annex II.에서는 5.채권수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됨

〈표 2-5-3〉 Annex II. 주요 내용

주요 내용
<b>1.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b>
▶ 채권발행자 정보, 발행 채권 정보, 제3자 검증 관련 정보 등
<b>2. 주요 정보 (Important Information)</b>
▶ Regulation (EU) 2023/2631를 준수하여 EU 녹색채권 지정(designation) 여부, 제5조(기술 심사 기준(TSC)을 제외하고 분류 요건을 준수하는 경제활동에 녹색채권 투자금의 최대 15%를 할당할 수 있음)에 관한 내용
<b>3. 환경 전략 및 정의 (Environmental strategy and rationale)</b>
▶ ① 개괄, ② 자산(assets), 매출액(turnover), 자본지출(CapEX), 운영비용(OpEX) 등 주요 핵심 성과 지표, ③ 기후 전환 계획 등
<b>4. 채권수익 사용 계획 (Intended allocation of bond proceeds)</b>
▶ ① EU 분류체계와의 (구체적인) 적합성, ② TSC 미충족한 활동, ③ 채권 발행 비용
<b>5. 채권수익과 환경적 영향 (Environmental impact of bond proceeds)</b>
▶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됨
<b>6. 공시 정보 (Information on reporting)</b>
▶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발행자의 홈페이지 주소, 보고 기간 등
<b>7. 자본지출 계획 (CapEX plan)</b>
▶ 자본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 등
<b>8. 기타 정보 (Other relevant information)</b>

- (EU 채권 임팩트 보고서 작성) 채권발행자는 채권이 만기 되기 전 채권의 투자금을 할당하고 투자금 사용이 환경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Annex III.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함 [GBR 제12조]
- EU 채권 임팩트 보고서(European green bond impact report)에는 ①채권 발행이 채권발행자의 광범위한 환경전략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평가, ② 채권 투자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③ Annex IV에 명시된 항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표 2-5-4〉 Annex III. 주요 내용

주요 내용
<b>1.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b>
▶ 채권발행자 정보, 발행 채권 정보, 제3자 검증 관련 정보 등
<b>2. 주요 정보 (Important Information)</b>
▶ Regulation (EU) 2023/2631를 준수하여 EU 녹색채권 지정(designation) 여부, 제5조(기술 심사 기준(TSC)을 제외하고 분류 요건을 준수하는 경제활동에 녹색채권 투자금의 최대 15%를 할당할 수 있음)에 관한 내용
<b>3. 환경 전략 및 정의 (Environmental strategy and rationale)</b>
▶ ① 개괄, ② 자산(assets), 매출액(turnover), 자본지출(CapEX), 운영비용(OpEX) 등 주요 핵심 성과 지표, ③ 기후 전환 계획 등
<b>4. 채권수익 사용 계획 (Intended allocation of bond proceeds)</b>
▶ ① EU 분류체계와의 (구체적인) 적합성, ② TSC 미충족한 활동
<b>5. 채권수익과 환경적 영향 (Environmental impact of bond proceeds)</b>
▶ 채권 수익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추정(estimate),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 및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 등
<b>6. 공시 정보 (Information on reporting)</b>
▶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발행자의 홈페이지 주소, 보고 기간 등
<b>7. 자본지출 계획 (CapEX plan)</b>
▶ 자본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 등
<b>8. 기타 정보 (Other relevant information)</b>

- Annex IV.에서는 채권발행 전/후 리뷰보고서 및 (채권 수익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임팩트 보고서와 채권 투자금 사용과 EU Taxonomy와의 적합도를 평가 및 분석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함
- 이 외에 리뷰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론, 주요 가정, 데이터 원천 등에 관한 설명도 요구함

〈표 2-5-4〉 Annex IV. 주요 내용

주요 내용
<b>1.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b>
▶ 채권발행자 정보, 발행 채권 정보, 제3자 검증 관련 정보 등
<b>2. 소개서 (Introductory statements)</b>
▶ 채권 발행 전(前) 검토보고서 (pre-issuance reviews)
▶ 채권 발행 후(後) 검토보고서 (post-issuance reviews)
▶ 임팩트 리뷰보고서(impact report)
▶ 외부 검토 보고서
<b>3. 투자금 사용과 EU Taxonomy와의 적합도에 대한 설명 (Statements on the alignments of use of proceeds with EU Taxonomy)</b>
▶ 채권 발행 전 리뷰보고서 또는 채권 발행 후 리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 채권 투자금 사용과 EU Taxonomy와의 적합도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
<b>4.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평가 방법론, 주요 가정, 그리고 데이터 소스 (Sources,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key assumptions)</b>
▶ 평가방법론, 주요 가정,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 이와 관련하여 제3자 검증 여부
<b>5. 평가와 의견 (Assessment and opinion)</b>
▶ 채권 발행 전/후 리뷰보고서 및 임팩트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의견 기술
<b>6. 기타 정보 (Any other information)</b>

- (제3자 검증) 제3자 검증 기관은 발행 채권이 녹색채권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등록 시스템과 감독체계를 마련함 [GBR 제23조]

### 3. 결론 및 시사점

-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목표 아래 ESG 공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EU의 공시 제도가 새로운 법률이라기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개정하거나 자율성에 기반한 국제 가이드라인(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ESG 공시 제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ESG 공시 제도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확대되어 진화하고 있다는 점, EU 회원국 이외에 비회원국까지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사안임
- 유럽연합(EU)의 ESG 공시 제도 5개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이들 법률은 EU내 관련법 및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상호운용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개정이 이루어짐
  -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들 가운데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존재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투자자들이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EU는 법 준수 및 이행시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위임법을 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음
    - 무엇보다 가이드라인 및 위임법도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임
- <표 3>은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 법률들을 항목별로 일괄 비교한 것으로 법률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각의 법률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 범위, 제재 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분석 대상 법률들은 이미 제·개정 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및 투자자들의 공시 적용 회계연도는 대체로 2~3년 이후부터 이기 때문에 EU Taxonomy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의 실제 공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2~3년이 지나야 유럽 기업 및 투자자들의 ESG 정보 공시의 실제 관행(practice) 및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외 ESG 공시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유럽 기업 및 투자자들의 비재무적 정보공시 실제 사례는 국내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3〉 EU ESG 공시 제도 요약

구분	EU Taxonomy	CSRD	CSDDD	SFDR	GBR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	●	X	X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	●	X	X
·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적 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X	X	●	X	X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Alignment)	●	●	●	●	●
· 공급망 실사 의무화(Due diligence requirement)	●	●	●	X	X
· 공급망 활동 범위: 업스트림	●	●	●	X	X
· 공급망 활동 범위: 다운스트림	●	●	●	X	X
· 공시 의무화(Disclosure requirement)	●	●	●	●	●
· 공시 범위 및 항목: 인권(Human rights topic in scope)	●	●	●	●	X
· 공시 범위 및 항목: 환경(Environmental topic in scope)	●	●	●	●	●
· 법률의 점진적/단계적 적용 (phased approach)	●	●	●	●	▲
· 외부 검증 및 검토 (External assurance, external verification or external reviewer)	X <sup>1)</sup>	●	●	▲	●
· 위반 또는 미준수 시 제재 여부	X	●	●	X	●
· 금융회사 적용 여부	●	●	▲ <sup>2)</sup>	●	●
· EU 비회원국 적용 여부	▲	●	●	X <sup>3)</sup>	●

\* 저자 정리, 일부 내용은 ERM, 2024,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를 참고

1) Disclosure Delegated Act에서 외부 검증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나 CSRD 체제하에서는 제3자 검증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2) 금융회사도 CSDDD의 적용 대상이지만 업스트림 활동 범위만 적용받고, 다운스트림 활동 범위는 적용받지 않음

3) 원칙적으로 EU 비회원국에 적용되지 않지만, EU 역내에서 금융상품(또는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SFDR의 적용을 받음

---

## SC 조사보고서 2024년 통권 제1호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저자 : 김선민

발행인 : 이정익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대표전화 : 02-3775-3339

홈페이지 : [www.CGS.or.kr](http://www.CGS.or.kr) / [sc.cgs.or.kr](http://sc.cgs.or.kr)

© 한국ESG기준원. 2024.

SC 조사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인용 및 복제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공익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cgsweb@cgs.or.kr](mailto:cgsweb@cgs.or.kr)을 통해 사전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단순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 보고서명, 저자 등에 관한 출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 조사보고서는 [http://sc.cgs.or.kr/resources/trends\\_list.jsp](http://sc.cgs.or.kr/resources/trends_list.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